

FTA 농업협상,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림부 제공

▶ FTA(Free Trade Agreement) : 특정국가간에 배타적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

-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의 한 형태임.
자유무역협정(NAFTA, EFTA 등), 관세동맹(베네룩스 관세동맹 등), 공동시장(EEC, CACM 등), 완전경제통합(EU 등) 등 4가지 유형이 있음
- WTO규범에서 일정조건 충족시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음
- 2007년 7월 현재 세계적으로 380여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이 중 205개 발효중)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2007년 12월 현재)

• 협상중(4개국)

	협상 개시	추진 동향
캐나다	2005년 7월	14차례 협상, 한·미 FTA수준 요구로 난항
인도	2006년 3월	9차례 협상, 보수적 양허초안 제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으로 추진중
EU	2007년 5월	5차례 협상, 돼지고기·낙농품 관세철폐 등 이견
멕시코	2007년 12월	1차례 협상, 상품 및 SPS협상 잠정안에 대한 검토 등 (2006년 2월 부터 3차례 협상 후 중단되었다가 재개)

• 발효(4개국)

	발표시기개시	타결 요지
칠레	2004년 4월	양허제의 412개 품목, 10년 철폐 197개 품목
싱가포르	2006년 3월	양허제의 484개 품목, 10년 철폐 377개 품목
EFTA	2006년 9월	양허제의 956개 품목, 일부감축 또는 10년 감축 288개 품목 (EU 미가입국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연합체)
아세안	2007년 6월 (상품분야)	초민감 품목제외 297개 10년 후 5%이하로 감축 151개 품목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 타결(1개국) : 미국(2007년 4월) 국내 비준절차 추진중

우리의 농업분야 협상 기본원칙

-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양허제외, 세이프 가드, 수입쿼터 등)과 국내보완대책 마련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에 추진

한·미FTA 농업부문 국내 보완대책, 이렇게 수립하였습니다.

대책수립 경과

- 2007년 6월 28일 : 협상타결 이후 3개월간(4~6월)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대책 발표
- 2007년 11월 6일 : 6.28대책 외에 농업인 단체 등 추가요구를 반영·보완 발표
 - 10. 29 경제정책조정회의, 11. 6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

보완대책 주요골자

- 품목별 취약부분을 보완 경쟁력 향상
 -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 (원예)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적극 육성하여 산지 생산·유통 조직을 규모화·조직화하고 품질 경쟁력 제고
- 본격적인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농업체질 강화
 - 농가등록제를 바탕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도입(10)
 - 경영이양직불제를 실효성있게 개편, 고령농 경영이양 지원
 - 식품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화 도모
-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농업인 개발사업 참여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도축세 폐지, 8년 이상 농지은행에 농지임대시 양도소득세 감면, 시·도지사의 농지전용권한 확대(20→50ha)등
- 급격한 수입증가 가능성에 대비,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등 단기적 피해보전제도 지속 운용

재정 지원 계획

- 보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10년간('08~'17) 총 20.4조원 투융자
 - 119조원 투융자 계획('04~'13)은 한·미 FTA 대책을 반영, 당초 119.3조원에서 123.2조원으로 3.9조원을 증액

WTO/DDA 협상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GATT에서 WTO까지

- GATT : 1947년 제네바에서 발족, 우리나라는 1967년 4월 정식가입
- WTO : GATT주도하에 관세인하 협상, 딜론·케네디·도쿄라운드 이후 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UR) 종료된 후 1995년 탄생(2007년 7월 현재 151개국의 회원국)

DDA 협상 경과

- 2006년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발
- 2007년 7월 농업협상그룹 의장(팔코너)의 『세부원칙초안』 배포, 다자협의를 거쳐 2008년 1월말 수정된 세부원칙이 제시될 전망
 - WTO사무총장(라미)은 2007년 11월말 회의에서 DDA협상타결 시점을 2008년말로 제시

『세부원칙초안』의 주요내용

관세감축	관세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국내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75%초과품목은 감축율 66~73%적용 등 관세 구간별 감축 • 개도국은 선진국 대비 1/2수준의 감축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축후 관세가 100% 이상인 품목비중이 5%이상인 경우 저율 관세물량(TRQ) 증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수는 선진국의 경우 4~6%(현재 1,452개 품목중), 개도국은 1/3추가인정 • 관세감축율은 일반품목 대비 1/2~1/3수준 차등 (저율관세물량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에게만 인정 • 민감품목보다 품목수와 자와 관세감축에 우대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왜곡보조 총액 50~60% 감축 • 감축대상보조는 45% 감축

DDA 협상 경과

- 그 동안의 협상 진전으로 선진·개도국, 수출·입국간 입장 차이가 많이 좁혀졌음
- 유사입장 국가와 공자하여 협상에 우리 입장 반영
- 세부원칙 타결에 따른 이행계획서 작성시에는 개도국 지위 확보 등으로 농업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